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11
----------	------------

제안연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반영 대상에,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 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 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한다.

원안	수정안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p> <p>1. ~ 6. (생략)</p> <p>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u>전문가 등의</u>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원안과 같음)</p> <p>1. ~ 6. (원안과 같음)</p> <p>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u>학부모, 전문가 등의</u>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에 대하여 행복이 가지는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학교와 학생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학생이 행복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학생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행복 정책을 추진한다.

③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④ 학교와 학생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학교·학생 행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과 제2

호에 따른 학생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4. “행복 격차”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과 학생에게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학생 행복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학생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학생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학교·학생 행복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학생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학교·학생행복지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학생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학생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학교의 구성원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학교·학생행복지표에 반영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학생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학교·학생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학교·학생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학교·학생 행복 실태조사 및 학교·학생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학생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중심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학생행복지표 작성 및 학교·학생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교·학생 행복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학생 행복 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 운영) 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학교·학생 행복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학생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행복교육 콘텐츠 등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학생 행복 증진 교육)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학교·학생행복지수의 개발·측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학교·학생 행복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학교·학생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